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벤처투자회사 투자 의무 이행기간 연장〉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00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벤처투자회사 투자 의무 이행기간 연장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1.
3. 회부연월일 : 2025. 5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 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 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9조).

Ⅲ. 검토의견

1. 벤처투자회사 투자 의무 이행기간 연장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총자산의 40% 이상을 창업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하는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제38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벤처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의 50퍼센트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5 년----- ----- ----- ----- ----- ----- ----- -----.
②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투자 의무비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	② -----5 년----- ----- -----

관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회수
· 경영정상화 등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제1
항에 따른 투자비율을 유지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투자 의무 이행 유
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③ (생략)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
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은 벤처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벤처투자회사에 대하여
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1. ~ 3. (생략)

4.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
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
상 계속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

③ (현행과 같음)

제49조(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
소 등)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5년-----

따른 투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5. ~ 14. (생략) ②·③ (생략)	5. ~ 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과 시행령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운용자산(자본금과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계)의 40% 이상을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투자비율은 3년 이후에도 유지하여야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가 위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업무정지명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현행 제도는 벤처투자회사에 일정 기간 내 투자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투자 대상의 발굴 및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투자금 소진 이후에야 유망 기술을 보유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이러한 구조는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어렵게 하여 벤처 투자의 질적 제고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 의무 이행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전략적인 투자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로 판단됨.

같은 취지로 정부는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관계부처합동, 2024.10.)을 발표하여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 이내 투자 의무 등 현행 벤처캐피탈 규제가 글로벌 표준 대비 투자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 투자 의무 준수 기간과 연도별 투자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을 통해 무리한 단기간 투자 압박을 완화하여 벤처투자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대상을 탐색할 수 있게 되고 짧은 시간 내 투자자금 소진, 붐앤버스트(Boom&Bust) 등 그간의 문제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벤처투자회사의 투자결정이 지나치게 미루어지는 등 자산운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신속한 자금공급이 필요한 초기 창업기업 등에 경영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붐앤버스트(Boom&Bust)란 특정 시장 또는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단기적인 투자규율, 과도한 낙관론, 사회적 유행 등으로 투자시장에 돈이 쉽게 유입되고 수많은 신생기업이 등장하는 붐(Boom)과 과잉투자과 비이성적 기대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급격한 붕괴가 나타나는 버스트(Burst)가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과열-쇠퇴 경향이 뚜렷한 벤처투자시장에서 특히 문제됨.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의 신중한 투자결정을 돕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의무 확인 시점 연장에 동의하나,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제38조 개정규정만을 적용할 경우 등록 후 3~5년간 매년 투자의무와 투자비율 준수의무가 모두 면제되므로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투자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대해 등록취소 등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49조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개정안	제2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에 관한 적용례) <u>제38조의 개정규정</u> 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수정안	제2조(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에 관한 적용례) <u>제38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u> 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문 의 처

02) 6788-5459